

##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 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065/02-6955-1004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 미국종합채권ESG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(H)  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채권형)  
다. 보관·관리기간: 2024.01.01 - 2024.12.31  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주  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SK증권

### 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| 변경일자       |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4.02.07 | 투자신탁 명칭 변경                | 삼성 KODEX 미국종합채권 SRI 액티브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(H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삼성 KODEX 미국종합채권 ESG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(H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4.03.27 | 운용/판매보수 조정 제 36 조(투자신탁보수) |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_____ 보수<br>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br>1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1.3<br>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1 |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_____ 보수<br>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br>1. 운용보수율: 연 1,000 분의 1.39<br>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0.01 |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을 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| 변경전     |      |      |       | 변경일 | 변경후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회계감사인명 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| 계약방법  |     | 회계감사인명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| 계약방법 |
| 대주 회계법인 | 1년   | 99만원 | 서면 계약 |     |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
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
- 부합함  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적정함  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해당사항 없음  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
- 공정함  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
- 적정함  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
- 해당사항 없음  
☐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
- 일치함  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 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
- 해당사항 없음

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 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